

 금융감독원	보도자료		금융은 틀 틀 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---	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6.3.(월)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3국 검사1팀 검사4팀	책임자 담당자	국장 팀장 팀장 최상두 (02-3145-7830) 이동영 (02-3145-7836) 박진영 (02-3145-7834)

“나스닥 상장”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주의하세요

■ 소비자경보 2024-20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- 주요 내용 -

-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(NASDAQ)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‘주식 교환증’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, 주식 양도(이체)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,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,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(이체)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[소비자 유의 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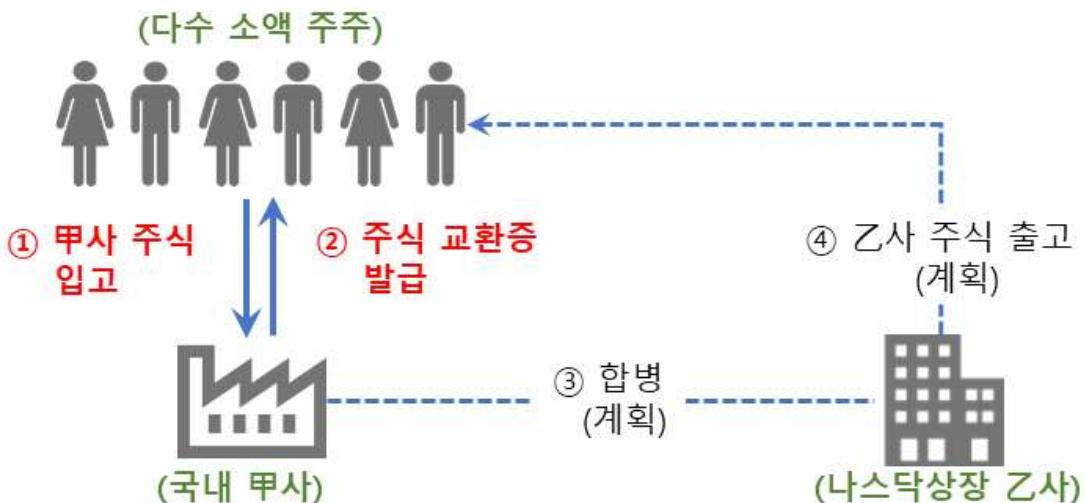
- ① 주식을 양도(이체)하는 경우, **소유권 · 의결권** 등이 함께 **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,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!**
- ② 해외 시장 상장은 **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,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!**

I

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근 시일 내 미국 나스닥(NASDAQ)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,
-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'주식 교환증'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
 - 이에 따라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발생*
- * 다수 소액 주주의 甲사 주식이 A증권사 甲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, B증권사 甲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

« 거래 구조 (회사측 주장) »



-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, 주식을 임의로 양도(이체)하는 경우,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,
-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II

소비자 유의 사항

[1] 주식을 양도(이체)하는 경우 소유권 · 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,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.

-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,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되어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
- 특히, 상장일정,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·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*에서,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주지할 필요
 - *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주간사 선정,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(SEC)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 필요

[2]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,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.

-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,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곤란하므로,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‘상장 예정’, ‘주식 교환*’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
 - *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므로,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하며 주식 이체 요구시 주의할 필요
- 또한,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, 회사소개서, 사업계획서, 언론보도*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,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
 - * 특히, 합의 각서(MOA)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, 장소, 참석자 등을 파악하여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 필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